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춘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14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.

발 의 자:최춘식·김희곤·권영세

김기현 • 권명호 • 정희용

김형동・구자근・이명수

박대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지방의회의 조직·권한 및 전문성 등은 집행기관에 비해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.

이에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, 정책지원 전문인력, 인사 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시·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33조의2 신설).
- 나.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5조의2 신설).

- 다.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(안 제66조의4 신설).
- 라.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(안 제91조 등).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3조의2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) ① 시·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, 보수 및 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5장제6절의 제목 "위원회"를 "교섭단체 및 위원회"로 한다.
- 제5장제6절에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55조의2(교섭단체) ① 지방의회에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 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다만,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 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- ② 교섭단체의 구성·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제6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66조의4(인사청문회) ① 상임위원회(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회의를 말한다)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의 후보자에 대한

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연다.

-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인사청문회의 인사청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- ③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제91조의 제목 "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)"을 "(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 중 "조례로"를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을 다음과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①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한다.
 -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장·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 다.
 -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교육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
제105조의 제목 "(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)"을 "(집행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"소속"을 "집행기관 소속"으로 한다.

제112조제1항 중 "지방공무원"을 "지방공무원(지방자치단체 의회 소속

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) 제6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지방공사의 장 또는 지방공단의 장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어 재직 중인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1항 중 "지방자치단체의 장(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"을 "지방자치단체의 장(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그 소속 기관의장, 지방의회의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"를 "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"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3조의2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
	인력) ① 시·도의회의원의 의정
	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
	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
	<u>둘 수 있다.</u>
	② 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
	문인력의 직무, 보수 및 임면
	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
	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제6절 <u>위원회</u>	제6절 교섭단체 및 위원회
<u><신 설></u>	제55조의2(교섭단체) ① 지방의회
	에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
	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
	의 교섭단체가 된다. 다만, 다
	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
	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
	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
	를 구성할 수 있다.
	② 교섭단체의 구성·운영 및
	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
	<u> 정한다.</u>
<u><신 설></u>	제66조의4(인사청문회) ① 상임위
	원회(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

제91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) 제91조(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 <신 설> 등) ①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

-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의 정수는 <u>조례로</u> 정한다.
-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 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

- 않은 경우에는 본회의를 말한다)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연다.
-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인사청문회의 인 사청문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- ③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제91조(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) ①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 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 한다.
 - ② -----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-----.
-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장·사 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에게 사 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

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를 위임할 수 있다.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 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 <u>국장·사무과장에게</u> 위임하여야 한다.

- 1. 별정직공무원
- 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 에 따른 임기제공무원
-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

<신 설>

제105조(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) 제105조(집행기관 소속 직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 대한 임면권 등) ------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 례·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교육훈련·복무·징계 등 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-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 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 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사무직 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 면·교육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 한 사항을 처리한다.

-----집행기관 소속---------지방공무원(지방자치단체

의회 소속 공무원과 지방자치단

	체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을 말
	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